



(갑자)  
※ 처리기간 : 3일

# 수입신고필증

① 신고번호 41364-25-500094M	② 신고일 2025/04/02	③ 세관과 020-09	⑥ 입항일 2025/04/03	⑦ 전자인보이스 제출번호
④ B/L(AWB)번호 HSTXK12503053FA	⑤ 화물관리번호 25SCLK2114I-0028-0004		⑧ 반입일	⑨ 징수형태 11
⑩ 신고인 관세법인충정 구현서		⑯ 통관계획 입항전신고	⑯ 원산지증명서 유무 N	② 총중량 19,500 KG
⑪ 수입자 (주)스타일하우스(스타일하-1-20-2-01-1 A)		⑯ 신고구분 일반P/L신고[사후제출]	⑯ 가격신고서 유무 Y	② 총포장갯수 12 GT
⑫ 납세의무자 (스타일하-1-20-2-01-1 / 864-86-01557) (주소)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50 (논현동) (06106) (상호) (주)스타일하우스 (성명) 이주현		⑰ 거래구분 11 일반형태수입	⑰ 국내도착항 KRINC 인천항	② 운송형태 10-LC
⑬ 운송주선인 (주)하이스통해운항공(HSTS)		⑰ 종류 21 일반수입(내수용)	⑰ 적출국 CN PRC	⑰ 선기명 SITC XIANDE HK
⑭ 무역거래처 XIAMEN MGS IMP AND EXP CO LTD (CN) / CNXIAMEN1714Q		⑰ MASTER B/L번호 XE2507NIN170	⑰ 운수기관부호	
⑮ 검사(반입)장소 02012016-25(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(주))				
● 품명·규격 (란번호/총란수 : 001/001 )				
⑳ 품명 GRANITE	㉚ 상표 NO			
㉚ 거래품명 GRANITE				
㉚ 모델·규격 (NO. 01) ZIMBABWE BLACK 28T*100*900 LEATHER	㉚ 성분	㉚ 수량 206.64 M2	㉚ 단가(USD)	㉚ 금액(USD) 14,051.52
㉚ 세번부호 6802.93-0000	㉚ 순중량 18,300 KG	㉚ C/S검사 S 생략	㉚ 사후확인기관	
㉚ 과세가격(IF) \$ 14,436 ₩ 21,179,702	㉚ 수량 0 ㉚ 환급물량 206.64 M2	㉚ 검사변경	㉚ 특수세액 0.00	
㉚ 수입요건확인 (발급서류명)				
㉚ 세종 관 부	㉚ 세율(구분) 8.00 (A기기) 10.00 (A)	㉚ 감면율 0.00 0.00	㉚ 세액 1,694,376 2,287,407	㉚ 감면분납부호 감면액 0 0 *내국세종부호
㉚ 결제금액(인도조건-통화종류-금액-결제방법)		CFR-USD-14,052-LU		㉚ 환율 1,467.1000
㉚ 총과세가격 \$ 14,436 ₩ 21,179,702	㉚ 운임 0 ㉚ 보험료 0	㉚ 가산금액 564,718 0	㉚ 납부번호 020-11-25-0151277 ㉚ 부가가치세과표 22,874,078	
㉚ 세종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·기타환경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가가치세 신고지연가산세 미신고가산세	㉚ 세액 1,694,370 0 0 0 0 2,287,400 0 0 0	※신고인기재란 SITU2768762업태 = 도매소매건설종목 = 석재.타일.무역외	㉚ 세관기재란 - 수입통관 후 단순가공, 날개·산물·분할 등 재포장 판매하거나 시공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며, 양도(재양도 포함) 시에는 양수인에게 이 의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됨. -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 변경될 수 있음. 20.7.1일부터 중소기업의 컨테이너 수출입회동에 대해서 세관감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,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(unipass.customs.go.kr) - 관세법 제157조의 2에 따라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수입화물을 반출하여야 함.(위반시 과태료 부과)	민원사무전용
㉚ 총세액계 3,981,770	㉚ 담당자 000000	㉚ 접수일시 2025/04/11	㉚ 수리일자 2025/04/11	

발행번호 : 2025175796020(2025.06.20)

세관과 : 020-09 신고번호 : 41364-25-500094M Page : 1/1

\* 본 신고필증은 발행 후 세관심사 등에 따라 정정·수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발행번호 등을 이용하여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 (<http://unipass.customs.go.kr>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\* 본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에서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수입화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.

\* 본 신고필증은 전자문서(PDF파일)로 발급된 신고필증입니다.

\* 출력된 신고필증의 진본여부 확인은 전자문서의 '시점확인필' 스템프로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.